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-137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구민상의 명칭을 삭제하고 관련 부문으로 조문을 개정하고, 일부 표창 서식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구민상의 시상 부문 수정(안 제9조제2항)
  - 구민상의 명칭을 삭제하고 관련 부문으로 조문을 개정
- 나. 일부 표창장 서식 변경(안 제10조제1항 및 별지 제6호)
- 다. 기타 표현 정비

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19. 10. 14. ~ 11. 4. (제출의견 없음)
- 2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동의
- 3)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: 해당없음
- 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5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6)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19. 11. 7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호 중 “**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**”를 “**각종 선행을 베풀고 구민의**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**문화상, 체육상, 용감한 구민상, 장한어버이상, 효행·선행상, 봉사상, 지역발전상의**”를 “**문화, 체육, 용감한 구민, 장한어버이, 효행·선행, 봉사, 지역발전 관련**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6조제6호에 따른 표창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.

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6호서식]

[ 액자메달형 표창장 ]



※ 표창장에 적용하며, 내용 및 기타 표기사항은 수정하여 사용

[액자]

- 재질 : 나무\*유리
- 크기 : 350mm(가로)×260mm(세로)×15mm(두께) / 30mm(액자테두리두께)
- 하단인쇄 : 금색 실크스크린
- 색상 : 브라운

[내지]

- 크기 : 297mm × 210mm
- 제작 : 옉셋인쇄
- 색상 : 바탕 흰색, 테두리 진한노랑

[배지관련]

1. 띠

- 크기 : 36mm × 50mm /36mm × 10mm
- 재질 : 천
- 색상 : 군청, 흰색, 빨강 3색

2. 배지

- 크기 : 70mm(최장지름)
- 재질 : 금속
- 색상 : 구회장 MAPO Sky Blue, 빨강, 녹색, 흰색, 금색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감사장)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.</p> <p>1. · 2. (생 략)</p> <p>3. <u>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</u></p>	<p>제8조(감사장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각종 선행을 베풀고 구민의</u> ----- -----</p>
<p>제9조(구민상) ① (생 략)</p> <p>② <u>구민상의 시상부문은 문화상, 체육상, 용감한 구민상, 장한어버이상, 효행·선행상, 봉사상, 지역발전상의 7개 부문으로 한다.</u>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9조(구민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u>문화</u>, <u>체육, 용감한 구민, 장한어버</u> <u>이, 효행·선행, 봉사, 지역발</u> <u>전 관련</u>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표창방법 및 시상금 등)</p> <p>① 표창장,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까지에 따른다. &lt;단서 신설&gt;</p> <p>② (생 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10조(표창방법 및 시상금 등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. 다만, <u>제6조제6호에 따</u> <u>른 표창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</u> <u>따른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[별지 제6호서식] [ 액자메달형 표창장 ]</p>



※ 표창장에 적용하며, 내용 및 기타 표기사항은 수정하여 사용

[액자]

- 재질 : 나무\*유리
- 크기 : 350mm(가로)×260mm(세로)×15mm(두께) / 30mm(액자테두리두께)
- 하단인쇄 : 금색 실크스크린
- 색상 : 브라운

[내지]

- 크기 : 297mm × 210mm
- 제작 : 옵셋인쇄
- 색상 : 바탕 흰색, 테두리 진한노랑

[배지관련]

1. 띠

- 크기 : 36mm × 50mm / 36mm × 10mm
- 재질 : 천
- 색상 : 군청, 흰색, 빨강 3색

2. 배지

- 크기 : 70mm(최장지름)
- 재질 : 금속
- 색상 : 구취장 MAPO Sky Blue, 빨강, 녹색, 흰색, 금색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안 제10조1항 단서 신설

“다만, 제6조제6호에 따른 표창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”

#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#### 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

#### 4. 작성자 : 행정관리국 총무과 이승희 (☎ 3153-8214)